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박 승 필 소유물(2025타경11917)
의 뢰 인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홍영수
감정평가서 번호	대한 제250813-16-0002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용지로 226 적십자회관5층
TEL : (055)285-8855 FAX : (055)285-8874

250813-16-0002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 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이 창 룡 (인)

㈜대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장 김 민 철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일억일천만원정 (₩110,000,000.-)			
의 뢰 인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홍영수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 무 자	-	제 출 처	창원지방법원 경매9계	
소 유 자 (대상업체명)	박 승 필(2025타경11917)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8.19	2025.08.18 2025.08.19	2025.08.19

감정평가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 액(원)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10,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10,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 · 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주)대한감정평가법인
KOREA APPRAISAL CO., LTD.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소재 '인제대학교김해캠퍼스'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의 개요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577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67-1)
건물명 및 동·층·호수	어방화인아파트 202동 20층 2003호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사용승인일자	1996.12.06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기호	해당 동/층/호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전용률 (%)	대지권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 도
(1)	202/20/2003	59.84	26.555	86.395	69.26	29.03	공동주택(아파트)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8월 19일입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물건에 대하여 2025년 08월 18~19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대상물건의 위치는 현황 점유부분 및 건축물대장상 현황 평면도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나. 대상 구분건물은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 이용상태 등은 조사치 못하였으나, 동종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태 및 외부관찰을 통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이 높은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평가에서는 토지 건물의 배분비율 적용시 2024 법원감정평가실무(아파트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2021년도)'상의 배분비율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가. 대상물건 거래사례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 층 / 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이용상황)
a	어방동 577	어방화인아파트 2**/18/18**	59.84	2023.11.25 1996.12.06	110,000,000	약 1,840,000	아파트
b	어방동 577	어방화인아파트 2**/8/8**	59.84	2024.12.21 1996.12.06	95,000,000	약 1,590,000	아파트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다. 대상물건 평가사례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 면적 (㎡)	평가 목적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평가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이용상황)
ⓐ	어방동 577	어방 화인아파트 2**/18/18**	59.84	경매	2024.02.20 1996.12.06	109,000,000	약 1,820,000	아파트
ⓑ	어방동 577	어방 화인아파트 2**/5/5**	59.84	경매	2023.02.03 1996.12.06	104,000,000	약 1,740,000	아파트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마.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유형	부동산 가치수준
단지 내 유사 층수 아파트	전유면적당 단가: 1,800,000원/㎡ 내외 수준

※동별 및 층별, 리모델링 여부 등에 따른 시세 편차가 존재합니다.

바. 경매 낙찰가율

지역 / 기간	경남/김해시 2024년 08월~2025년 07월

구 분	낙 찰 가			낙 찰 건 수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집합건물	64,995,000,000원	49,644,049,462원	76.4%	1,085건	341건	31.4%
아파트	54,862,000,000원	44,058,930,883원	80.3%	732건	255건	34.8%

<최근 1년간 해당 지역 용도별 평균 낙찰가율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비교사례의 선정

최근 거래된 사례 중 대상물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 사용승인일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대상 물건
b	어방동 577	어방 화인아파트 2**/8/8**	59.84	2024.12.21 / 1996.12.06	95,000,000	약 1,590,000	(1)

나. 사정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1) 개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의 매매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치

대상 물건	비교 사례	구 분	거래시점	기준시점
			매매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1)	b	매매가격지수 (경남 김해시 (아파트))	2024년11월 100.9	2025년07월 99.4

3) 시점수정치 산정

대상 물건	비교 사례	구 분 (산정기간)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치 산정
(1)	b	경남 김해시 (아파트) 2024.12.21~2025.08.19	0.98513	1+((99.4-100.9)/100.9) ≒ 0.98513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 구분건물(주거용)

조 건	세부항목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버스정류장)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폭,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건 기호	사례 기호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개별요인 비교치
(1)	b	1.00	1.00	1.17	1.00	1.170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호별요인(층별효용 및 동별효용 등)에서 우세합니다.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거래사례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전유 면적 (㎡)	산정금액 (원)	시산가액 (원)
(1)	1,590,000	1.00	0.98513	1.170	1,832,637	59.84	109,664,998	110,000,000

Ⅳ.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목적 및 장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이 높은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호	소 재 지	건물명 동/층/호	전유면적 (㎡)	대지권 (㎡)	감정평가액(원)	비고 (전유면적㎡당 단가)
(1)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577	어방 화인아파트 202/20/2003	59.84	29.03	110,000,000	1,838,235
합 계					110,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준시점 : 2025-08-1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비고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도로명]	577 어방 화인아파트 202동	공동주택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5층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67-1			지하층	592.48			
				1층	608.64			
				2층	608.64			
				3층	608.64			
				4층	608.64			
				5층	600.80			
				6층	600.80			
				7층	600.80			
				8층	600.80			
				9층	540.95			
				10층	540.95			
				11층	540.95			
				12층	540.95			
				13층	450.60			
				14층	450.60			
				15층	450.60			
				16층	450.60			
				17층	450.60			
				18층	450.60			
				19층	450.60			
				20층	450.60			
				21층	450.60			
				22층	390.76			
				23층	390.76			
				24층	390.76			
				25층	390.76			
			부속 건축물 노인정, 관리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준시점 : 2025-08-1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 공부	면적 (㎡) 사정	감정평가액	비고
			입주자 회의실					
			노인정		165.51			
			관리실		169.11			
			입주자 회의실		172.65			
			주차장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층	697.20			
			주차장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층	2,370.50			
			주차장, 주차장 계단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1,344.00			
			주차장		1,344.00			
			주차장 계단실		15.00			
			전기실, 펌프실, 발전기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전기실, 펌프실, 발전기실		24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준시점 : 2025-08-1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비고
			계단실		13.49			
			경비실	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5.00			
			공중변소	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6.00			
			가스 저장소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55.00			
			주차장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층	336.00			
1	동 소	577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24,161			
(1)				(내) 철근콘크리트조 20층 2003호	59.84	59.84	11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26.555㎡ 포함)
				소유권 1. ---- 대지권	2,903 ----- 2,416,100	29.03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33,000,000

건 물 : 77,000,000

합 계							₩110,000,000.-	

이 하 여 백

(주)대한감정평가법인
KOREA APPRAISAL CO., LTD.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소재 "인제대학교김해캠퍼스"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5층 건물 내 20층 2003호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폐문부재로 조사치 못함.
바 닥: 폐문부재로 조사치 못함.
창 호: 샷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기호 (1)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건물 내 제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경사지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 등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측으로 소로2류, 남측으로 소로3류와 각각 접하며, 동측 노변에 출입구가 소재합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임 대: 미상입니다.

2)기 타: 본건 현장조사 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인근 동종 유사물건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입찰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위치도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577 어방화인아파트 202동 20층 20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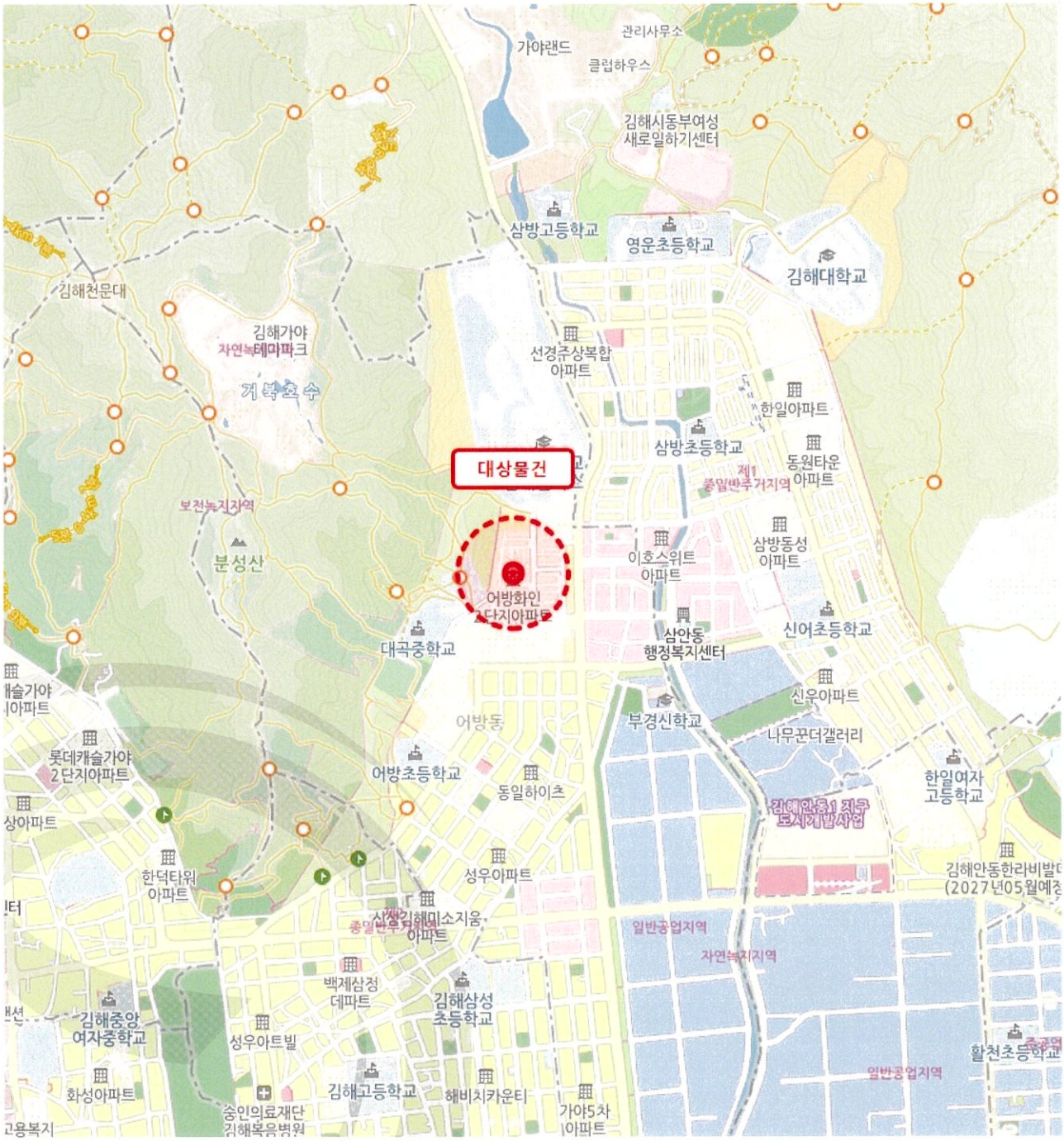

(주)대한감정평가법인
KOREA APPRAISAL CO., LTD.

상세위치도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577 어방화인아파트 202동 20층 20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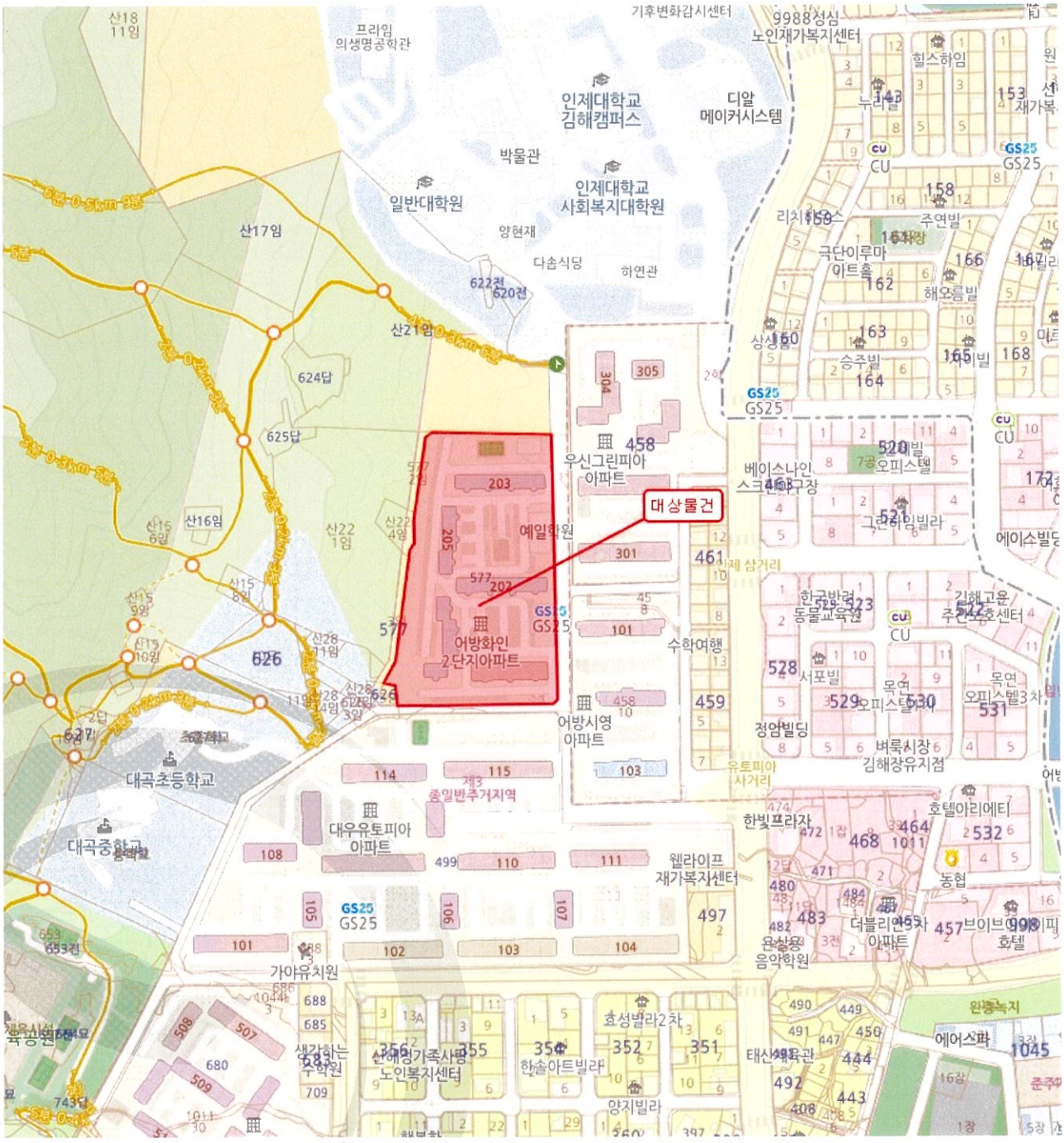

호 별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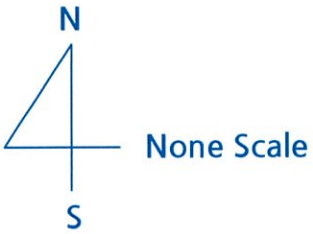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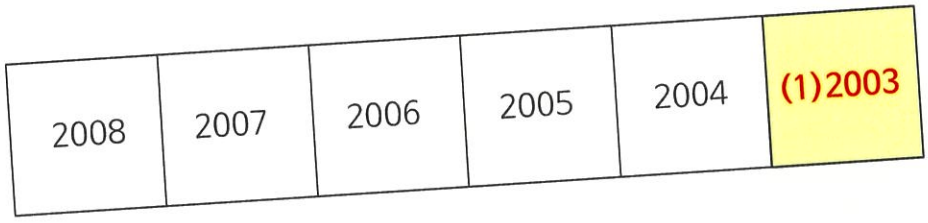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577 어방화인아파트 202동 20층 2003호]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1층 현관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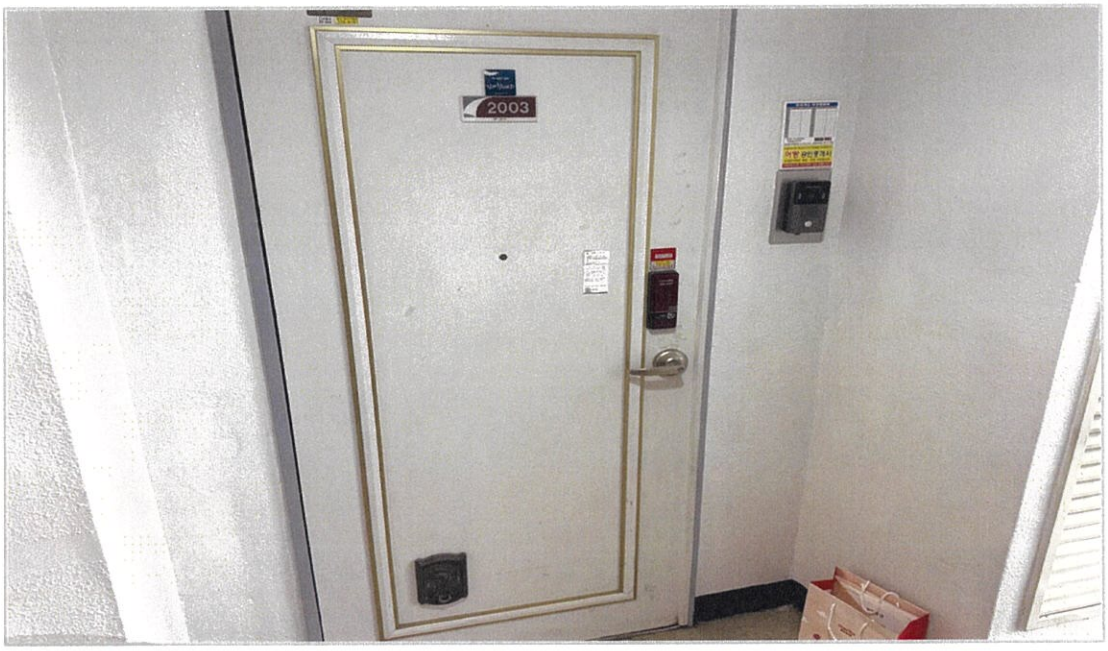

기호(1) 출입문